##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(한준호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12713

발의연월일: 2021. 9. 28.

발 의 자: 한준호·고용진·기동민

김홍걸・노웅래・오영환

이용빈 · 이원욱 · 임오경

장철민 · 정필모 · 조승래

조응천 · 홍성국 의원

(14인)

##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은 재난 및 안전사고 발생 시 신속 대응을 위해 건축물 등에 구내용 이동통신설비 설치를 의무화 하고 있음.

그러나 구내용 이동통신설비 예비전원은 축전지로 연결되어 있어, 화재·지진 등 재난이 발생하거나 설비 고장 등으로 인해 정전이 될 경 우 구내용 이동통신설비에 대한 전력 공급 시간이 매우 짧아 구조요 청을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음. 특히 진압 시간이 많이 소요되는 다중이용건출물에서의 화재 시 휴대전화를 통한 신고 및 구조요청이 불가능하게 되는 문제점이 있음.

이에 건축물 등에 대한 전기 공급의 장애가 발생했을 때에도 구내용 이동통신설비가 화재 진압 및 대피시간만큼은 정상적으로 작동할수 있도록 하기 위해 다중이용건출물에 비상전원단자 연결을 의무화

하여 재난사고의 확대 및 대형 인명·재산피해를 예방하고자 함(안 제6 9조의2제2항 신설). 법률 제 호

##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

전기통신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69조의2제2항을 제3항으로 하고,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, 같은 조 제3항(종전의 제2항) 중 "제1항에"를 "제1항 및 제2항에"로 한다.

② 제1항제1호에 따른 시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에 대해 기간통신사업자는 화재, 재난 등이 발생한 경우에도 구내용 이동통 신설비가 안정적으로 운용될 수 있도록 건축주의 비상전원단자에 연결하여야 하며, 건축주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협조하여야 한 다.

## 부 칙

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69조의2(구내용 이동통신설비	제69조의2(구내용 이동통신설비
의 설치) ① (생 략)	의 설치) ① (현행과 같음)
<u>&lt;신 설&gt;</u>	② 제1항제1호에 따른 시설 중
	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에
	대해 기간통신사업자는 화재,
	재난 등이 발생한 경우에도 구
	내용 이동통신설비가 안정적으
	로 운용될 수 있도록 건축주의
	비상전원단자에 연결하여야 하
	며, 건축주는 정당한 사유가 없
	는 한 협조하여야 한다.
② 제1항에 따라 설치하여야	③ 제1항 및 제2항에
하는 구내용 이동통신설비의	
종류, 설치기준 및 절차에 관한	
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	